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 시 협의 요청서 제출기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215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이에 수집하려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요청 기한을 매년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변경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통계법」의 가구명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으로 규정 (안 제20조)

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제공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는 지역, 성별, 연령분포 등을 고려하여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안 제2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장제도”로, “매년 4월 30일까지”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장제도”로, “매년 4월 30일
까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요청)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승인통계와
협의통계의 조사결과 및 사업제, 가구 등 통계등록부 등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자료

부 칙

4.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등에 관한 자료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상황 등에 관한 자료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퇴직급여 등에 관한 정보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자산 등에 관한 자료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등에 관한 자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등에 관한 자료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의3에 따른 보험 계약 등에 관한 자료
 11.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자료
 12. 기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관련 정보 또는 자료
- 제21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요구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 표1과 같다.
- ②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는 모집단의 특성에 따라 지역, 성별, 연령분포 등을 고려하되, 표본규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관련 구체적 요구 자료

1.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 대출 등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납부액, 가입유형,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유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고용보험 보험료, 구직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에 관한 자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횟수, 보상, 지원 등에 관한 자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유형, 수급기간,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 참여, 자활급여수급, 수급 기간 등에 관한 자료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여부, 수급구분, 수급액, 수급기간 등 지원에 관한 자료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수급액, 수급기간, 기초급여액 등에 관한 자료
8.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유형, 지원기간, 지원금 등에 관한 자료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액, 수급기간에 관한 자료
10. 기타 특별법에 따른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1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자료
 - 출산 전·후, 아동, 청년, 중장년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급·이용 등에 관한 자료
 -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급·이용 등에 관한 자료
 - 보건, 교육, 문화 및 환경 등 분야별 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급·이용

등에 관한 자료

- 이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급·이용 등에 관한 자료
1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로 구인·구직 정보,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등에 관한 자료
 1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등에 관한 자료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 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환급 내역 등에 관한 자료
 15.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주택제의 건축물시가표준액,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과세 등에 관한 자료
 16.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관한 자료
 17.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승인통계와 협의통계의 조사결과 및 사업체, 가구 등 통계등록부 등에 관한 자료
 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근로금액,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금 등에 관한 자료
 20.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유형, 거주기간, 월 임대료, 보증금 등 임대주택정보에 관한 자료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월 차임, 계약 기간 등에 관한 자료
 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의 가입여부, 가입기간, 퇴직연금 수급여부 등에 관한 정보
 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대출금 등과 같은 금융정보에 관한 자료

2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연금 가입여부, 지급방식, 지급기간, 지급액 등에 관한 자료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여부, 지급방식, 지급기간, 지급액 등에 관한 자료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장성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정보 자료
2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정보 자료
28.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u>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 <u>사회보장제도</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u>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u>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u>사회보장제도</u> -----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신 설>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
공요청)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법」 제18조 및 제20
조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승
인통계와 협의통계의 조사결
과 및 사업체, 가구 등 통계등
록부 등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
산정보자료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
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
금 지원 등에 관한 자료
4.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
한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자료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
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

<신 설>

차 계약 상황 등에 관한 자료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3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
른 퇴직급여 등에 관한 정보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자산 등에 관한 자료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
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자금 등에 관한 자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
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
금 등에 관한 자료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의3에 따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자료
 11.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자료
 12. 기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관련 정보 또는 자료
- 제21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요
구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
체적인 내용”은 별 표1과 같다.

②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는 모집단의 특성에 따라 지역, 성별, 연령분포 등을 고려하되, 표본규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연 락 처	(044) 202 - 3718